2017 년도 JET 프로그램 (대한민국) 모집요강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1. 실시요강

JET 프로그램(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 어학 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 청년 유치사업)은 일본에 있어서 외국어 교육의 충실 및 청년 교류에 의한 지역 차원의 국제교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일본과 외국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일본의 국제화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은 JET 프로그램 참가자(이하 '참가자'라 한다)에게 지방공공단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등의 활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달성된다.

본 사업은 일본국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및 자치체국제화협회(이하 'CLAIR'라 한다)의 협력 하에 지방공공단체 등(이하 '임용단체'라 한다)이 실시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외국정부의 지원, 협력 하에 1987년에 처음으로 시작하여 2016년도에는 40개국으로부터 4.952명이 참가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과거 30 년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높은 평가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초청된 참가자는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명예를 가진 자로서 국제적 상호 이해의 증진에 노력하는 등 상당 한 책임을 다할 것이 기대되며 일본에 대한 깊은 관심, 원만한 성격 및 건전한 심신 등을 가진 사람들이 응모해 주기를 바란다.

통상 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는 1 년간의 임용기간으로 도도부현(都道府県)이나 시구정촌(市区町村), 사립학교 등의 직원으로서 임용단체로부터 임용된다. 도일 시의 항공운임과 보수는 임용단체(임용단체의 납세자)가 부담한다. 참가자는 지방공무원이나 사립학교 등의 직원으로서 임용단체에서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적합한 행동이 요구된다.

<u>배치처 결정 후 참가 취소 및 임용기간 도중의 퇴직 등은 임용단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본 프로그램</u>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1. 모집 직종 및 직무 내용

(1) 모집직종 : 스포츠국제교류원(SEA)

특정종목의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활동에 종사하는 자. 지방공공단체의 관계부서 등에 배치되어 직무에 종사한다.

(2) 직무내용

임용단체의 소속장의 지시를 받아 직무에 종사한다. 직무내용은 임용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임용단체의 스포츠 지도사무 보조 (스포츠 사업의 기획・입안 및 실시 시에 협력, 조언 등)
- 2) 지역의 우수한 선수 등에 대한 스포츠 지도 협력
- 3) 임용단체의 직원, 지역주민에 대한 스포츠 지도 협력
- 4) 지역의 민간 국제교류단체의 스포츠 사업 활동에 대한 조언, 참가

5) 그 외 소속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2. 근무조건

근무 조건은 사업주체인 임용단체가 결정한다. 임용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임용기간·근무시간

임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도일일 다음날부터 1 년간으로 한다. 또 지정 도일일에 도착하지 않고, 도일이 늦어진 자에 대해서는 기간이 단축된다.

참가자가 별도로 임용단체가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1 년을 만료하지 않아도 임용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임용단체와 참가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1 년간 재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임용의 횟수는 원칙적으로 2 회까지로 한다. (합계 3 년간 JET 프로그램 참가) 단, 임용단체가 근무실적, 경험·능력을 고려하여, 특히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4 회까지 재임용이 가능하다.(합계 5 년간 JET 프로그램 참가) 기간 중도에 퇴직을 하면 학교 교육계획이나 본 프로그램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모든 참가자는 임용기간 임기를 만료할 것이 요구된다.

근무 시간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1 주일에 35 시간 정도이다. 근무 시간 배정은 임용단체에 따라 다르나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후 5 시 15 분의 시간대 내에서 정해진다. 기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일본의 경축일은 휴일이다.

<u>단, 연습이나 시합의 예정 등 업무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되거나, 토요일 일요일, 일본의</u> <u>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이 많다. 또한 유급휴가는 임용단체에 따라 다르나, 최저 10일은 부여된다</u>.

(2) 보수

연간 보수액은 1 년차는 336 만엔 정도이고, 재임용되는 경우 2 년차는 360 만엔정도, 3 년차는 390 만엔 정도이다. 또 임용단체가 특히 우수한 참가자에 대하여 2 회를 초과하여 재임용을 한 경우, 4 년차 및 5 년차 의 연간 보수액은 각각 396 만엔 정도이다. 이 금액은 일본에서 평균적 생활비로는 충분한 금액이다.

또 이 금액은 1 년간 임용기간을 만료한 경우이고, 1 년차의 임기기간이 1 년미만인 경우의 연간 보수액은 이 금액을 밑돈다.

소득세 및 주민세가 과세되는 경우(주 1 참조)에는 본인이 부담한다. 1 년차의 임용기간이 1 년 미만인참가자 에 대해서는 일본의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보수지급액의 대략 20%가 소득세로과세된다.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된다. 귀국 시에는 그 해의 과세된 주민세 등의 일부를 일괄 납세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또 일본에서는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그 경비의 일부는 개인부담이다. 개인 부담은 매달 세금 공제 후의 보수에서 보수 지급 때 공제된다.

(3) 겸업의 금지

참가자는 임용기간 중 본 프로그램 이외의 취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4) 자동차 운전

업무 사정상 자동차의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임용단체가 있다.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에 관해서는 개인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

3. 자격 요건

- (1) 일본에 대해 관심이 있고 참가자가 된 후에도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것. 일본의 지역사회에서 국제교류 활동에 참가할 의욕이 있을 것. 일본어 학습에 노력하거나 학습을 계속할 의욕이 있을 것.
- (2) 심신이 건강할 것.
- (3) 일본에서 직무에 종사하여 생활적응 능력을 갖추고, 책임감 있게 임용기간의 직무를 다할 의지가 있을 것
- (4) 응모 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한국 영주권자 제외). 또한 일본 국적(이중국적자)을 가진 자는 참가 동의서 제출일까지 일본 국적이탈 수속을 밟을 것에 유의한다. 일본 이외의 이중국적을 가진 자는 하나의 대상 국적자로서 응모 가능하다.
- (5) 영어 또는 일본어의 실용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 (6) 2014 년도 이후(2014 년 4 월 지정 도일일 이후) JET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없고, 과거 참가누계 기간이 5 년 이하 일 것.
- (7) 전년도에 JET 프로그램에 합격하여 배치처 결정 통지 후, 사퇴한 자가 아닐 것.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응모 시까지 2007년 이후 합계하여 6년 이상에 걸쳐 일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을 것
- (9) 본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일본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욕을 가지고 있을 것
- (10) JET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때,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 2 조 2 에 정해진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것에 동의할 것
- (11) 일본의 법령을 준수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
- (12) 범죄에 관련한 형벌 등의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자는 응모 시까지 집행유예가 만료되어 있을 것
- (13) 한국 올림픽위원회(KOC), 정부기관 등이 특정종목의 지도자의 분야에서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 그리고 해당 지도종목에 관련된 전문학교 등의 졸업 취득 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지도종목에 적어도 3년이상 실무 경험이 있을 것.

4. 선고 및 결과통지

- (1)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이 신청서류에 의거해서 서류심사(1 차 시험) 실시 후 면접선고(2 차 시험)을 실시하여, 후보자를 결정한다.
- (2) 면접선고 후 당 대사관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임용단체가 결정된 자를합격자로 한다. 그 외 후보자는 보결자 또는 불합격자로 한다.
- (3) 결과는 2017년 0월 이후 당 대사관으로부터 통지하고 합격자에게는 배치된 임용단체명이 통지된다.
- (4) 그 후 임용단체로부터 채용 내정 통지서, 근무조건이나 근무처를 명시한 서류, 임용단체의 소개

팸플릿 등이 합격자에게 직접 송부된다.

(5) 보결자는 사퇴의 상황에 따라 2017년 12월 둘째 주까지 합격자로 되는 경우가 있다.

5. (무)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의 제출

합격자는 원칙적으로 (무)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를 당 대사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보결자가 합격자로 된 경우에는 도일 시기에 따라 다시 건강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 (무)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하여

- 1) (무)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서 적어도 5년이상(기간에 제도상 제약이 있을 시 가능한 가까운 기간)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 2) 원칙적으로 현 거주지의 정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3) 과거 5년간 해외 동일한 나라에서 적어도 12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체재한 경험이 있는 응모자는 해당국의 (무)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
- 4) 과거 5년간 일본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응모자에 대해서는 일본 거주 기간에 한하여 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또한, 서류제출 후 병에 걸리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은 JET 프로그램 합격자격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속히 당 대사관에 신고할 것

6. 합격자격의 취소

합격자 및 보결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고 없이 해당인물에 부여된 합격자격등이 취소될 수 있다.

- 1) 참가자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2) 응모서류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 3) JET 프로그램 참가에 적절치 않은 범죄력(음주운전, 마약, 성범죄, 아동범죄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응모서류 제출 후도 포함)
- 4) 참가동의서 및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서 등을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 일본국적을 가지는 이중국적자가 참가동의서 제출 기일까지 일본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 (보결자는 제외한다. 단 보결자의 경우, 합격자로 되었을 때 신속히 일본 국적이탈의 수속을 밟을 것)
- 6) 응모 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당사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으로 사후에 밝혀진 경우

7. 임용단체로 배치

참가자는 CLAIR 가 결정하는 임용단체에 부임해야만 한다. 부임처는 일본 전국에 걸쳐있어 그 중에는 병원이나 공공교통기관 등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은 지역도 있다.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같이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고려되나 반드시 희망대로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고려해야 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모든 응모서류에 기입할 것, 그 외의 방법에 의한 요망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응모 후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고려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고려하는 특별한 사정

- 1) 배우자도 동시에 본 프로그램을 응모한 경우
- 2) 이미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본인 가족의 거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8. 오리엔테이션 및 연수

(1)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

일본으로 출발 하기 전에 본 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일본어 학습 교재가 제공된다. 그리고 출발 전에 당 대사관에서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데 합격자는 출석해야 한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의 참가자에 대한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은 실시되지 않는다.

(2)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신규 참가자는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에 출석해야만 한다. JET 참가자는 일본에서 직무상 필요한 지식 등에 대해서 연수를 수강한다.

(3) 연수

도일 후 참가자는 일본어 능력의 향상과 귀국 후의 일본어 보급 등을 통한 일본의 이해를 촉진하기위해 일본어 학습의 기회가 CLAIR 로부터 제공된다. 또 임용단체나 CLAIR 가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는 연수에는 반드시 출석해야만 한다.

9. 주거

주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참가자가 계약하여 주거에 필요한 비용도 모두 참가자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가자는 입주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도일 후에 상당금액(월세의 2~6 개월분 정도)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임용단체가 주거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임용단체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도항 및 귀국에 대하여

(1) 도일 비용의 변상 등

합격자는 지정된 일정에 따라 (2)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항공편으로 도일해야만 한다. 지정된 항공 기에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도적인 이유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격은 취소된다.

대한민국의 지정된 공항까지의 국내 교통비는 자기 부담이다.

대한민국의 지정된 공항에서 나리타 국제공항까지 또는 동경국제공항(하네다 공항)까지의 항공권 및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회장까지의 교통비, 숙박비 및 오리엔테이션 회장으로부터 각 임용단체로의 교통비 등은 해당 임용단체의 여비규정에 준하여 임용단체가 부담한다. 또한 여비규정에는 가장 합리적인 통상 경로 및 방법이 요구된다.(이하 동일)

이 때문에 배치처 결정 후 본 프로그램의 참가를 사퇴한 자 및 합격이 취소된 자는 인도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와 관련되어 발생된 취소 수수료 등(임용단체가 도일 후의 주거준비나 일본 국내의

이동에 관한 수속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에 관한 것도 포함)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항공운임의 취소 수수료는 취소가 확정된 날에 따라 다르지만, 지정된 출발일로부터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의 기간은 해당 항공운임의 반액, 지정된 출발일 14일 전부터 출발일까지 기간은 전액이다. 또 '인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 일본 국내에서의 참가에 대해

본 프로그램 참가 전에 이미 '단기체재'이외의 재류자격으로 일본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합격자는 일본 국내에서 지정 도일일까지 재류자격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일본 국내에서의 참가가 인정된다. **재류자격의 변경 여부는 참가자의 책임으로 일본 국내의 소정의 입국관리국에서 확인하여** 수속할 것. 재류자격의 변경이 가능하여 일본 국내에서 참가하는 경우는 그 취지를 참가동의서에 기입하여 당 대사관에 신고할 것

또한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으로 일본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에 대해 재류자격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JET 프로그램의 참가 전에 일단 귀국하여 당 대사관에서 사증을 취득하고 나서 지정된 항공편으로 도일하게 된다.

일본 국내에서 참가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공항 또는 지정된 철도역에서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회장까지의 지정 도일일에 이동한 경우에 한해 교통비 등을 임용단체가 부담한다. 지정된 공항 또는 지정된 철도역까지의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회장으로부터 100km 미만의 지점에서 참가하는 경우의 교통비는 전부 본인이 부담한다.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회장에서 부임지까지는 같은 지방에 배치된 참가자와 함께 이동하게 되며 개별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그 교통비는 임용단체가 여비규정에 준하여 부담한다.

(3) 종료 후의 귀국비용

임용기간 종료 후 귀국비용은 임용기간 종료 후 귀국까지의 사이에 일본에서 해당단체 또는 제 3 자와고용관계를 맺는 일이 없으며, 임용기간 종료일 그 다음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임용단체의 여비규정에 준하여 임용단체가 부담한다.

일본 국내에서 참가한 자에 대해서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임용단체가 귀국비용을 부담한다.

(4) 도일 경비의 반환

참가자는 임용기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하는 등 임용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 도일 후에 JET 참가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등에 의해 면직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귀국함과 동시에 임용단체가 지불했던 왕복경비를 반환해야 한다. 또한 그 외의 비용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5) 사증 취득

합격자는 도일 전에 당 대사관에서 취업사증을 반드시 취득하여 '취업'의 재류자격으로 도일한다. 참가자의 동반가족(배우자 및 자녀)은 재외공관에서 법률상 유효한 혼인관계 또는 친자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한 후에 사증신청을 하여 가족체재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대상 가족은 법률상 유효한 혼인관계 또는 친자관계인 가족을 말하며 약혼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등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11. 프로그램 종료 후에 대하여

JET 참가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일본이나 부임 지역과 한국의 가교로서 활약할 것이 크게 기대된다. 과거의 JET 참가자는 종료 후 각국·지역에서 동창회 조직인 JETAA(JET Alumni Association)를 발족시켜, 일본과 한국의 우호관계 촉진을 위한 풀뿌리 차원에서의 다양한 활동(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JET 귀국자 관리, 일본문화소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JET 프로그램 종료 후 참가자는 CLAIR 가실시하는 'JET 프로그램 종료 후 연락처 등 조사'에 귀국 후의 연락처를 응답하는 동시에 귀국 후 당대사관(일본 국내의 경우 CLAIR)에 연락한 후에 JETAA 에 참가하여 일본소개,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크게 기대된다.

12. 개인정보

본 응모에 관련된 개인정보는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서 사용되는 것 이외에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CLAIR, 도도부현(都道府県) 및 정령지정도시(주 2 참조), 임용단체에 제공되어 배치, 오리엔테이션 실시 등에 사용된다. 또, 채용 후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임용기간 도중에 중도퇴직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그 시기 및 이유 등을 상기 관계기관에 연락할 수도 있다.

- ※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1) 중도 퇴직자의 보충 업무
- 2) 각종 부담금의 청구·지불 업무
- 3) JET 상해보험에 따른 계약이나 관리
- 4) JET 프로그램 참가자 리스트의 갱신
- 5)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
- 6) 그 외 JET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

13. 전속적 관할 재판소 및 준거법에 대한 규정

모집에 대하여 전속 관할 재판소는 도쿄 지방재판소로 한다. 또,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한다.

[주]

주 1) 면세

조세조약 등에 의해 일본의 조세면제에 적용을 받는 자는 반드시 모국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모국에서 조세제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참가자의 책임이고, 과세의 경우는 참가자가 부담하게 된다.

주 2) 정령지정도시

정령으로 지정된 인구 50 만 이상의 시. 대도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통상 도부현(道府県)에 속하는 사무가 이양되어 있다. 현재는 札幌, 仙台, 新潟, さいたま, 千葉, 横浜, 川崎, 相模原, 静岡, 浜松, 名古屋, 京都, 大阪, 堺, 神戸, 岡山, 広島, 北九州, 福岡, 熊本 (20 市).

Ⅱ. 모집 종목 및 배치처에 관한 정보

1. 모집 종목

: 필드 하키

2. 지도 대상자

: 초등·중·고등학생

3. 배치예정지

: 오이타현(大分県) 교육청 체육보건과

4. 주요업무

1) 지역밀착으로 필드 하키의 진흥에 나서는 '구스정(玖珠町)', '고고노에마치(九重町)'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하키 지도.

(2008년 국민체육대회 개최지, 2017년 전국중학교체육대회 개최 예정지)

- 2) 초등·중학교의 하키를 활용한 아동, 학생과의 국제교류
- 3) 스포츠 이벤트 개최에 대한 조언
- 4) 국민체육대회에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서포트

Ⅲ. 시험 응모 및 실시 방법

1. 응모방법

- (1) 원서 접수 : 6월 8일(목) 부터 6월 30일(금)까지
 - 1) 방문 접수 : 6월 8일(목) ~ 6월 30일(금)까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JET 프로그램 상담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 출구)

2) 우편 접수 : 6월 8일(목) ~ 6월 28일(수) 소인까지만 유효 (등기에 한함, JET 프로그램 응모 서류 라고 명기할 것)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

- 주 소 :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JET 프로그램 담당자 앞
- 문의: 02-765-3011 (내선 140) / jet@so.mofa.go.jp
- ※ 우편 접수의 경우 본인 주소를 기입한 반송용 우편봉투(우표 부착, 우체국 규격봉투)에 동봉할 것
 (규격봉투가 아닐 경우에는 우편요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까운 우체국에 확인하고 발송 할 것)

(2) 응모 서류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모든 양식은 1-8 번까지 순서대로 준비하여 원본 1부, 복사본 4부를 제출할 것. 단, 8 번 양식은 1부 제출)

- ※ 절대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모든 양식은 가급적 빠른 시일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응모신청서 1부 (당관 양식, 별첨 1), 수험표(2장 1set) 1부(당관 양식, 별첨 2)
 - ※ 사진원본 2 매를 수험표에 부착할 것.

(가로 x 세로(3.5cm×4.5cm), 반드시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컬러 프린트 등 불가)

- 2) 졸업증명서(영문) ※ 편입한 자는 편입 전 학교의 졸업증명서 포함
- 3) 성적증명서(영문) ※ 편입한 자는 편입 전 학교의 성적증명서 포함
- 4) 자기소개서 1 부(일본어나 영어, 워드작성, A4 2 장 이내)
 - ※ 단, 2 장이 넘는 부분은 채점하지 않으므로 주의할 것.
- 5) 추천서 2통(일본어나 영어로 작성)
 - ※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졸업예정 연월일이 명기된 대학교수 추천서 1통을 첨부.
- 6) 자기 건강보고서 (당관 양식, 별첨 3)
- 7) (무)범죄경력증명서(국·영본) : 경찰서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
 - * 한국과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는 반드시 JET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문의할 것
- 8) 여권 복사본(컬러)
 - 응모원서에 작성한 로마자와 여권의 로마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여권의 사진의 얼굴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컬러로 반듯하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자기 건강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서의 자기 건강보고서에 '병력 없음'이라 기재하였으나, 최종합격 후 제출하는 건강진단서에 병력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것이라도 '허위신고'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요망.
- <u>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병력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를 위 서류 제출 시 첨부할 것. 또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할 것</u>. (필요 시 추가 제출 서류이므로 공보문화원 JET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반드시 연락하여 추가 서류를 제출 할 것.)